

#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24.(화)  
건설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6. 3. 4.

나. 제안자: 이선옥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일자: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6. 3. 24.)

- 제안설명: 이선옥 의원
- 검토보고: 윤주인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픽시(Fixed Gear)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큼.
- 현행 법령만으로는 픽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특히 청소년·초보 이용자 대상의 체계적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함.

- 이에 이용 실태조사, 제동장치(브레이크) 임의 제거 금지, 안전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 생명·안전 보호 및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픽시 자전거 안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
- 픽시 자전거 이용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 관계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프리휠(Freewheel)이 없고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구조로 되어 있어 페달 역회전을 통해 감속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운행되는 경우 긴급 제동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픽시 자전거의 개념]

- “픽시(Fixie)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sup>1)</sup>로,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갖춘 상태로 제조·유통·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sup>2)</sup>에 따른 자전거의 범주에 해당함.
- 그러나,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개조한 뒤 운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sup>3)</sup>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1) 픽시 자전거는 트랙 경기 등에서 사용되는 경기용 자전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반적인 자전거와 달리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행 중 페달을 멈춘 상태로 유지할 수 없고 페달을 역방향으로 돌리면 뒷바퀴도 함께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후진이 가능함.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3)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는 것은, 깔끔한 외관과 빠른 속도, 스키딩(skidding) 등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점이 ‘멋있고 힙하다’는 인식과 SNS·영상 플랫폼을 통한 유행 확산과 결합했기 때문으로 보임.

## [법적 관리체계]

- 법 제2조에서는 자전거를 구동장치·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갖춘 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를 차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8월경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로 보아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sup>4)</sup>에서도 청소년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제도적 대응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와 관련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임.

---

4)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 보도자료 링크: [경찰청 홈페이지>보도자료](#)

- 참고로 타·시도에서도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타 시·도 조례 현황 >**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6. 1. 5.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픽시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6. 2.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2026. 2. 24.

- 조례안의 주요 내용 구성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를 정의하는 것으로, 법 제2조의 정의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마련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시민이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으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상위법령에서도 자전거 안전운행 및 안전장치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픽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김대중, 김용희, 석정규, 박종혁, 이단비, 이인교 위원

나. 반 대: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기어(fixed gear) 방식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 방지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경찰청, 자치군·구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